서울특별시 양천구 통·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2745호

제출년월일 : ２０２２년 6월 3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에서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,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정합성을 제고하고, 통·반장의 임명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각 행정동에 두는 통·반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함.(안 제1조)

나. 각 행정동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에 반을 두되, 통과 반의 구성범위를 정하고, 통장 및 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두도록 함.(안 제2조)

다. 통의 명칭과 구역은 구청장이 정하고, 반의 경우에는 동장이 정하도록 함.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(2022. 2.18~2022. 3.10) 결과 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양천구 통·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양천구 통·반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양천구 통·반 설치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각 행정동에 두는 하부 조직인 통·반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통·반의 조직) ①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각 행정동에 통을 두고, 통의 관할에 반을 둔다.

② 1개 통은 6개 반 이상 10개 반 이하로 구성한다.

③ 1개 반은 2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. 다만,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구수를 가감할 수 있다.

④ 통에는 통장을 두고, 반에는 반장을 두되 통장 및 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조(통·반의 명칭 및 구역)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정하고,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. 통·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【관 계 법 령 】

□「지방자치법」

제7조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① ~ ④ (생 략)

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
⑥ (생 략)

□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81조(이장 및 통장의 임명)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,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·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·면장·동장이 임명한다.

③ (생 략)